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4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비수도권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우대 (구자근의원안)	2

I.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64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8.

(3) 회 부 일 : 2024. 8.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비수도권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우대 (구자근의원안)

현행				개정안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및 제24조) ① R&D 세액공제(제10조) <table><tr><th>구분</th><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2</td><td>8~15</td><td>25</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30*</td><td>30~40</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40</td><td>40~50</td></tr></table>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②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td><td>3</td><td>6</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td><td>15</td><td>15</td><td>25</td><td>4</td></tr></table>				구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	8~15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15	25	4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R&D 공제율 우대: +20%p ②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우대: +20%p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	8~15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15	25	4																																						

* 구자근의원안 2024. 8. 8. 발의(의안번호 2646)

☐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비수도권 기업이 20%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기업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당기분 방식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증가분 방식은 기업규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고 있음.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20~40%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당기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음. 당기분과 관련하여,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규정한 반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규정하여 일반 시설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설투자과 신성장사업화시설은 공제율 3%가 적용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공제율 4%가 적용됨.

한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 지역의 순이동자 수¹⁾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나 2017년 이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3~2023)]

(단위: 천 명)

권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4	-21	-33	-1	16	60	83	88	56	37	46
중부권	28	39	49	41	42	28	11	12	24	34	17
호남권	-7	-6	-8	-16	-18	-28	-25	-24	-16	-13	-15
영남권	-25	-23	-22	-40	-54	-69	-71	-78	-67	-61	-47

주)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자료: 통계청, '2022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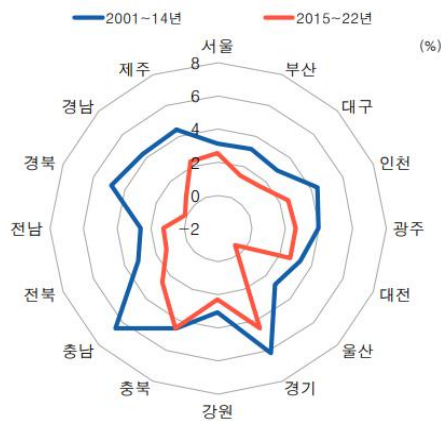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지역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²⁾ 지역내총생산(GRDP)을 2001년~2014년(전국 평균 4.2%)과 2015년~2022년(전국 평균 2.5%) 두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3.1% → 2.5%)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

1) 순이동자수는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의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 읍면동의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 통계로,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값으로 계산함. 순이동자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이며 순 인구 유입을 의미하고, 순이동자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로 순 인구유출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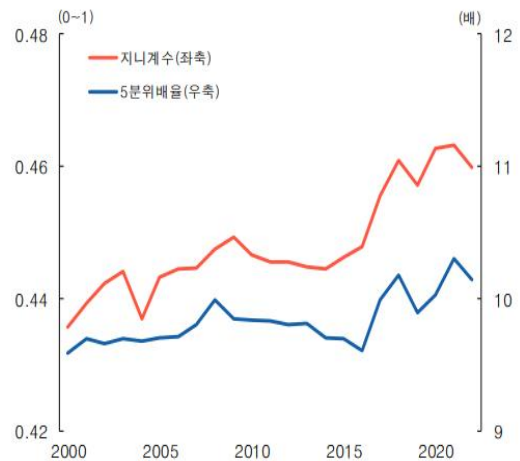
2)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집한 경기(6.1% → 4.5%) 및 충북(4.5% → 4.5%) 지역은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하락하는데 그친 반면, 울산(2.8% → -0.6%), 충남(6.6% → 2.7%), 경북(4.8% → 0.1%), 경남(4.3% → 0.6%) 등 비수도권의 제조업 특화 지역들은 △3%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지역 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연평균 GRDP 성장률]



[지역간 GRDP 불균형]³⁾



자료: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자본스톡의 집중현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국가 전체 자본스톡의 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면적 1km² 당 자본스톡이 2,434억원인데 비해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의 15.7%인 383억원임. 또한 지역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1인당 인프라 규모도 비수도권대도시⁴⁾는 2,400만원으로 수도권 대도시(2,700만원)에 비해

3) 지니계수: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이 심함

5분위배율(배): 상위 20%지역(16개 지자체중 1~3위)의 평균 생산액/하위 20%지역(14~16위)의 평균 생산액

낮음 수준임.⁵⁾

□ 이에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의 R&D 투자와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비수도권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R&D 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R&D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심층평가」에 따르면, 세액공제 제공으로 기업의 R&D 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며 R&D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⁶⁾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의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가 추정되었음.

둘째, 비수도권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R&D 활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022년 기준 수도권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비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은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66.9%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인 경우가 많은 상황임.

4) 수도권 대도시는 서울, 인천이며 그 외 지역 대도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을 의미함.

5)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4.6.19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 9.

[2022년 지역별 연구개발비 투자액]

(단위: 백만원)

지역	연구개발비	지역	연구개발비
서울	17,688,535	강원	763,520
부산	2,037,676	충북	2,487,439
대구	1,578,436	충남	4,116,387
인천	3,602,927	전북	1,475,578
광주	1,129,290	전남	946,446
대전	10,379,115	경북	3,195,310
울산	1,307,878	경남	3,255,519
세종	751,287	제주	227,835
경기	57,702,830	합계	112,646,00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2022년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명)

지역	연구개발인력	지역	연구개발인력
서울	216,378	강원	12,348
부산	26,634	충북	24,116
대구	20,850	충남	27,216
인천	30,104	전북	18,579
광주	14,971	전남	10,396
대전	56,024	경북	28,508
울산	10,747	경남	33,843
세종	7,080	제주	4,236
경기	271,733	합계	813,76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R&D 및 설비 투자결정은 세제지원에 따른 세부담 수준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투자결정은 세제 인센티브 외에도 입지, 글로벌 경기에 대

한 기업의 전망, 금리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음.

2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11가지 요인⁷⁾ 중 “관련 산업 조세지원”을 1순위로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은 0.7%였으며, 1~5순위를 통합하여 산출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련 산업 조세 지원”은 가장 낮은 11번째(5.6%)를 차지하였음.⁸⁾

기업이 투자의 주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기업의 현재 이익”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업이 투자 위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시장 접근성”과 “해당 위치에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산업조세 지원 수혜”를 1순위로 고려한 비율은 0.4%, 1~5순위로 고려한 비율은 14.9%였음.

둘째,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있으며 기업 본사 및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다른 세제지원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7) 설문조사에 포함된 11가지 요인은 △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 유희 설비 존재 여부, △ 기업의 현재 이익, △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 기업지배구조,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 거시적 환경, △ 관련 산업 경쟁수준, △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 관련 산업 재정 지원, △ **관련 산업 조세 지원**, △ 기타 있음.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9)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5년간 50% 세액감면(법 제6조)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공제액 100만원 추가(법 제29조의8)

셋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법 제130조¹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비수도권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③ 기업 이전: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 본사 이전 시 7년간 100%+3년간 50% 감면(법 제 63조 및 제63조의2)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